

(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-참조1)

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55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9. 14

발 의 자 : 김완창의원 등 18인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연 35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를 규정하였던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2항이 2005. 1. 27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「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“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”를 삭제

성남시 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</u> <u>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</u> <u>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</u> <u>이내로 한다.</u>	<u>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</u> <u><삭 제></u>

관계법령 발췌서

관계법령	내 용	비 고
지방자치법	제38조 (정례회)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1999. 8. 31] 제39조 (임시회)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시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<개정 1994. 3. 16>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·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41조 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. ②삭제 <2005. 1. 27> ③년간 회기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·도에 있어서는 120일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1989.12.30, 1994.3.16, 1999.8.31>	
지방자치법 시 행 령	제19조의4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 <개정 2000. 7. 1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00. 7. 1>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1999.12.31]	